

#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96. 10. 4

총 무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9. 1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9. 23
- 라. 상정일자 : 1996. 10. 2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과장 유영동)

### 가. 제 안 이 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나. 주 요 골 자

- 가)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을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2조).
- 나) 시민의 건강증진과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제정 1995. 1. 5 시행일 1995. 9. 1)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 5. 토 론

- 없었음

### 6. 소수의견

- 없었음

###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91 호
의결년월일	1996. . . (재 회)

##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9 .10 .

#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7
----------	----

제출년월일 : 1996. 9. 10.

제출자 : 서산시장

##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협의회는 회장은 1인과 부회장을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안 제2조).

나. 시민의 건강증진과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민의 건강증진 사항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